

첨 부 2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사업』 과업지시서

2022. 5



목 차

I. 일반사항	3
II. 특수조건	5
III. 구입품명 및 세부규격	12
IV. 보안특약조항	13

[별첨 1] 보안서약서

[별첨 2] 보안확인서

[별첨 3] 개인정보 동의서

I .

일반사항

1. 사업명 :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사업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하 “증명발급시스템” 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관련 전산장비(H/W, S/W)에 대한 규격, 설치조건,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4. 납품 및 설치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18층 전산실

5. 사업범위

본 사업은 아래 물품(H/W, S/W)의 납품 · 설치 · 운영과 사후관리를 포함하며 세부 규격은 “III. 구입품명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서버 · 스토리지 및 랙 각 1식

나. L4 스위치 1식

다. 문서위변조방지 솔루션 및 리포팅 툴 각 1식

라. 증명서 서식 개발 6종

6. 계약조건

가. 계약업체는 계약 후 납품 · 설치 · 개발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고 반드시 작업 전 협회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

나. 납품하는 제품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 · 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사양으로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하고, 누락된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 납품한다.
- 라.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마. 증명발급시스템 설치 후, 구동에 필요한 관련 H/W 및 S/W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바. 증명발급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업체가 부담 하며,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무상유지보수

- 가. 납품 설치한 증명발급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서버 · 스토리지는 3년간, 네트워크장비 · 소프트웨어는 1년간으로 한다.
- 나. 증명발급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증명발급시스템 복구(4시간이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8시간이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장비(부품)로 신속히 대체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업 전 · 후를 막론하고 외부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 나. 계약업체는 전산실 출입 등 협회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I. 특수조건

본 조건은 협회와 계약업체가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설치, 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하자보수, 무상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III. 구입품명 및 세부규격”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품,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나. 소프트웨어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일반사항

- 가. 납품·설치하는 장비는 H/W 및 S/W 구성, 통신 연결 등이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증명발급시스템을 설치할 때 협회 전산실에 설치된 기존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연동되어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설치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피해복구와 손해 배상을 한다.
- 다. 물품 납품·설치 시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칙적으로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라.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적법한 사용권이 제공 되어야 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수량, 용량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라이선스 기간은 영구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라도 계약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해야 한다.
- 마. 협회는 납품·설치된 제품이 본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 바.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H/W, S/W는 입찰 전까지 국내에 발표된 최신의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업그레이드 발표 포함)는 납품을 불허한다. 또한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되는 사항은 계약금액의 한도에서 납품업체가 책임지고 추가 또는 대체 공급한다.

3. 작업진행

가. 장비설치 일반

-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설치 방법은 협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계약업체는 인터넷 중명발급 시스템의 운영체제(CentOS), Apache Tomcat의 설치 및 설정을 완료하고, 서비스가 정상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장비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서버 및 통신망 장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4) 장비 설치 시 규격 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에 해당 품목과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한다.
- (5) 장비 설치 시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업체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6) 계약업체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기록한 작업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7) 시공 중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은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나. 사용자재 및 기기

- (1)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기기, 소모품 등은 계약업체가 부담 한다.
- (2) 소프트웨어가 지원되는 모든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공급한다.
- (3) 기자재 반입·반출시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작업시간

- (1) 납품설치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일과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2) 작업시간을 편의상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증명서 서식 개발

- (1) 담당자가 제시하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후, 협회 담당자에게 테스트 및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개발 완료 된 것으로 한다.

4. 검수 및 시험운영

가. 계약업체는 증명발급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사진, 설치 내역서 등)를 제출한 후,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가동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증명서 서식은 협회 담당자가 별도 검수하여야 한다.

나. 물품 규격 확인은 본 설명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다.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담당 직원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한다.
- 라. 최종 검수결과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증명 발급시스템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의 요구에 의해 계약업체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한다.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가. 계약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협회 시스템 담당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증명발급시스템의 정상 가동 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시스템 담당자에게 운영방법, 장애 조치방법 등에 대한 관리자 지침서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협회 시스템 담당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무상 교육은 다음과 같다.
 - (1) 시스템 설정사항, 운영방법, 납품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방법
 - (2)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요령 등
 - (3) 협회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기술교육

6. 무상 유지보수

- 가. 증명발급시스템 구축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H/W, S/W, 인건비 등)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나. 계약업체는 무상유지 보수기간 동안 협회에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계약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증명발급시스템 설치 후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시스템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으로 대체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 경우 대체장비 철수 시 디스크 완전 초기화 등 협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한다.)
- (3) 계약업체는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운영에 있어 협회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 (4)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에 장애(하자)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점검에 임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해야 한다.
- (5) 계약업체는 검수완료 후 라도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6) 계약업체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발생에 대비해야 하며, 협회의 요구에 따라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7) 계약업체는 증명발급시스템 전담 기술자를 유지관리에 투입하여야 하고, 전담 기술자 변경 시 협회의 사전 승인과 보안조치 받아야 한다.
- (8)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증명발급 시스템의 하드웨어 교체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계약 시 제출 서류

- (1) 납품 및 설치 일정
- (2) 사업수행(설치) 계획서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서류

- (1) 납품장비 및 솔루션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2) 사업 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별첨1] 각 1부

다. 검수요청 시 제출 서류

- (1) 납품물품 사진첩(H/W, S/W 등 납품 전체 목록 및 작업사진)
- (2) 시스템 납품내역서(계약금액 기준 물품 상세 품목별) 1부
- (3) 사후관리 전담기술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 (4)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정품 확인서
- (5) 관련 소프트웨어 원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
- (6) 각종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각 1부
- (7) 계약업체 대표자 보안확인서[별첨2] 1부

8. 보안관리

- 가.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라. 계약업체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시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마. 계약업체는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무상 서비스 만료) 시점에서 『별첨2』 보안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바. 계약업체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하는 제품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9. 이의에 대한 협의

- 가. 협회와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협회와 계약업체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 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협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0. 기타

- 가. 협회가 요구하는 성능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어 시공 시 추가되는 자재와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추가되는 자재 및 설비는 계약업체가 부담 한다.
- 나. 계약당사자 쌍방은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다.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유권은 협회에 귀속한다.

III. 구입품명 및 세부규격

구 분	세 부 사 양	수 량
서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U : 2.3GHz 32Core 이상 / 최대 2 소켓이상 확장가능 ○ 메모리 : DDR4 128GB 이상 / Slot 24개 이상 ○ HDD : 480GB SSD(2.5inch) × 2개 이상 ○ I/O : 1G 4p / 16G 1P HBA 각 2개 이상(PCI 8개이상 확장가능) ○ Power : 500W이상 이중화 구성 ○ <u>Warranty 3년</u> 	1식
스토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D : Physical 10TB(SSD) 이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Flash Storage 제품 ○ I/O : 16GB 이상 FC Port × 4개 이상 제공 ○ 컨트롤러: Dual Controller(Active/Active)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ID 6이상 ○ <u>Warranty 3년</u> 	1식
L4 S/Wi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 PIOLINK, A10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00/1000 : TX × 12Port 이상 - SFP : 1G×8Port 이상 / 10G×2Port 이상 - 메모리 : 16G이상 / SSD :120GB이상 ○ 성능 : Sure-Connection 기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화 구성시 세션 공유기능, 설정 동기화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지원 ○ <u>Warranty 1년</u> 	1식
보안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GA 위변조방지 솔루션(Trustcertificate No-Plugin v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변조 방지코드 생성 및 검증 모듈 ② 전자서명 모듈 ③ 멀티브라우저 모듈 ○ <u>Warranty 1년</u>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BI 리포팅 솔루션(UBIReport Lic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biServer v4.0 License ② HTML Viewer ③ 개발툴 디자이너 라이선스 ○ 증명서 서식 6종 개발 ○ <u>Warranty 1년</u> 	2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 스토리지 표준 Rack 1식 ○ 운영체제 및 Web · Was 설치 	

IV.

보안특약조항

- ①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하거나 협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수행 전 보안서약서(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협회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자 소 속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귀하

[별첨2] 사업수행 후 보안확인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습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인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귀하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 관련 용역사업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사항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서약서 징수
2. 수집항목 : 소속, 직위, 성명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이내
4.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권리 : 보안서약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 통제구역의 출입을 제한 받는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